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9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4년 9월 2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 일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, 원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7조제3항에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함.

2. 주요 골자

- 시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지침서를 작성·배포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3항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중 “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”를 “구청장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기준”으로, “수 있으며, 구청장에 대하여”를 “수 있고,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, 구청장에게”로 “제출을 요구 하거나”를 “제출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·확인할 수 있으며,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·확인할 수 있으며,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시장은 <u>시민들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자치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게 해당 자치구에서 제작·배포한 홍보 및 교육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 <u>구청장의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기준 ----- 수 있고,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, 구청장에게 ----- 제출과 -----.</u></p> <p><삭 제></p>